



被告人 審判請求人の 死亡과 訴訟

<日本最高裁判所 1980年 12月 18日 判決, 1977年(行ツ)130號>

1. 上告人: X

2. 被上告人: Y, Y₁

3. 判決主文

本件上告를 棄却한다.

上告費用은 上告인의 負擔으로 한다.

4. 事件概要

無効審判請求에 의해 特許權의 登錄을 無效로 하는 審決을 받은 特許權者인 X가 이 無効審判請求人 Y를 被告로 하여 審決取消訴訟을 提起하였던 바 이 소송의 繫屬中에 本件被告인 Y가 死亡한 까닭에 承繼人인 Y₁이 이 소송을 승계한 후 判決되었다.

그러나 X는 이 無効審判請求人の 地位는 一身專屬的인 것 이므로 Y의 사망에 따라 이 審決取消訴訟은 終了된 것인데도 그에 따른 判決을 하지 않고 請求棄却의 判決을 한 原判決은 違法이라 하여 上告한 事案이다.

5. 判決要旨

特許無効審判請求人이 피고가 되어 있는 審決取消訴訟의 繫屬中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民事訴訟法에 의거하여 그 相續人 및 其他法令에 의해 소송을 繼行해야 하며 소송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고 解釋함이妥當하다.

따라서 原審의 所論에 違法

이 없다.

6. 解說

本件의 爭點은 무효심판청구인의 法律上地位가 그 性質上一身專屬的인 것 이므로 무효심판청구인의 죽음과 同時に 그節次는 종료한 것이며 상속을前提로 하는 民訴法規定의 適用餘地도 없다는 上告理由에 대하여 最高裁判所는 特許無効의 심판청구인인 Y가 된 審決取消訴訟의 繫屬中에 Y가 죽었을 경우에는 民訴法이 適用된다는 데에 있다.

즉 X의 上告理由는 Y가 죽은 것은 심결취소소송중이긴 하나 Y가 本件無効審判請求人이므로 特許無効審判請求人은 特許法의 解釋上 利害關係人이어야 하며 特許法의 特許異議申請人과 같이 누구라도 無妨하다는 规定으로 미루어 반드시 利害關係人에 局限할 必要가 없다고 区別하여 생각할 수 있는 立場이다.

가령 심결취소소송중일지라도 이 利害關係人的 죽음에 따라 소송 특히 提訴의 利益이 되는 當事者の 한쪽의 사망에 의해 소송의 종료를 뜻한다고 생각할 입장으로 볼 수가 있다.

이에 대한 판결은 特허무효심판청구인이 피고가 되어 있

는 심결취소소송계류중의 피고사망이므로 특허무효심판 그自體가 아니라 이미 訴訟段階에 있을 때의 피고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特許法上當事者適格問題는 民訴法의 準用에 의한行政事件訴訟法의 節次上の 문제라 하여 民訴法의 該當條項을 적용해야 한다고 判斷한 것으로 보인다.

그러나 特許無効審判이 提起되어 무효심결이 된 이상 이 심결취소소송에서 심판청구인이 訴訟繫留中에 사망해도 無効審判制度의趣旨로 보아 同訴訟을 계류시키기 위하여 民訴法을 적용한 소송을 繼行함이 이種類의眞實을 發見하기 위한 소송에 필요한 것이라는 見解들이다.

또한 無効審判請求制度自體가 特許法目的에 副應하는 眞實한 發明에의 特許獨占權許與라는 趣旨에서 즉 途中에서 當事者の 한쪽이 죽어도 이해관계인으로서의 地位가 그 審判請求時에 存在하며 심결된 이상 소송중의 죽음으로서 그 피고의 適格與否까지 문제로 삼아 소송의 종료를 主張함을 許容할 수 없다는 意見도 없지 않다.